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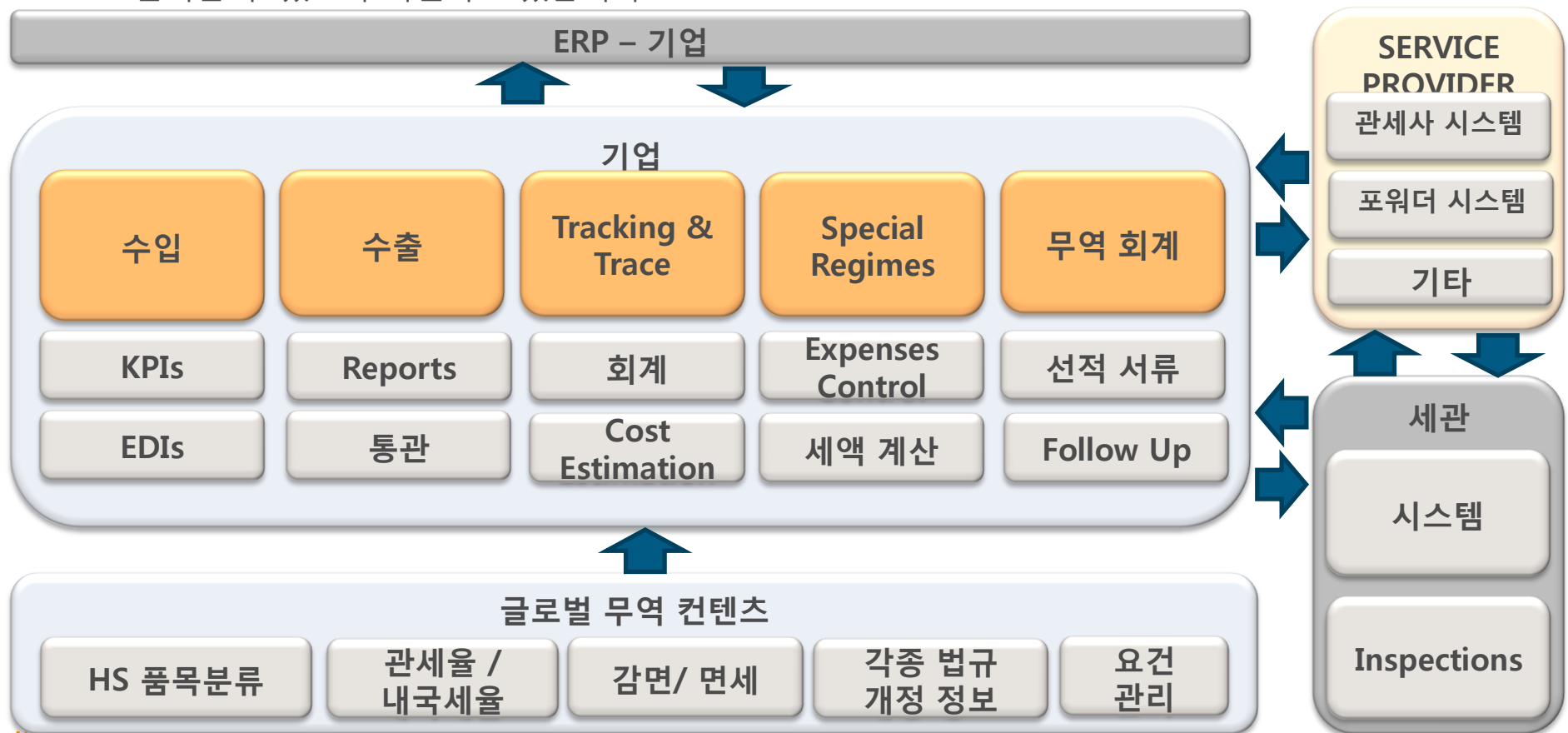
TPP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 방안

INDEX

- FTA 현황 · TPP 개요
- TPP 협정문 주요 내용
- 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TPP 주요국의 입장
- TPP로부터의 위험 요소와 관리
- 베트남 FTA 현황 ·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수 문서
- TPP를 위시한 원산지 관리 방안
- FTA 솔루션 주요 기능 · 개요
- 컨텐츠 관리 · 협력사 관리 · Advanced 자동화 · 로컬 수출 원산지 판정

Global Trade Management

- 톰슨 로이터의 국제 무역 관리 솔루션인 ONESOURCE Global Trade Management는 수출입 프로세스, FTA, 국가별 특수 관세제도 등의 국제무역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현황

베트남 Free Trade Agreements (Current)

- 기체결된 FTA, 베트남-아세안, 베트남-일본, 베트남-칠레
- 서명/타결: 베트남-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베트남-한국, 베트남-EU
- 협상중 (3 FTAs): 베트남-EFTA, 베트남-TPP, 베트남-RCEP
- 검토중인 FTA: 베트남-FTAAP

글로벌 Free Trade Agreements (Current)**

- **ASEAN FTA:** ASEAN- 중국, ASEAN- 일본, ASEAN- 한국, ASEAN- 인도 등
- **US FTA:** NAFTA (미국, 멕시코), US- 싱가포르 등
- **EU FTA:** EU- 이스라엘, EU- 이집트 등
- **멕시코 FTA:** 멕시코- MERCOSUR, 멕시코- 칠레, 멕시코- 일본 등

* Not an exhaustive list; examples provided merely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More than 300+ FTAs in the world

원산지 실사 사례 (Current)

- 미국으로 부터 수입한 알코올 및 화학 제품: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 ASEAN 국가로 부터 수입한 주석제품: 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으로 인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싱가포르부터 수입한 유리판: 중간재 적용 오류로 인한 원산지 불충족, 이로 인해 협정관세 배제

Mega FTAs

-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EU-USA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United States, Vietnam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 China, Japan, Korea, India, Australia, New Zealand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미국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TPP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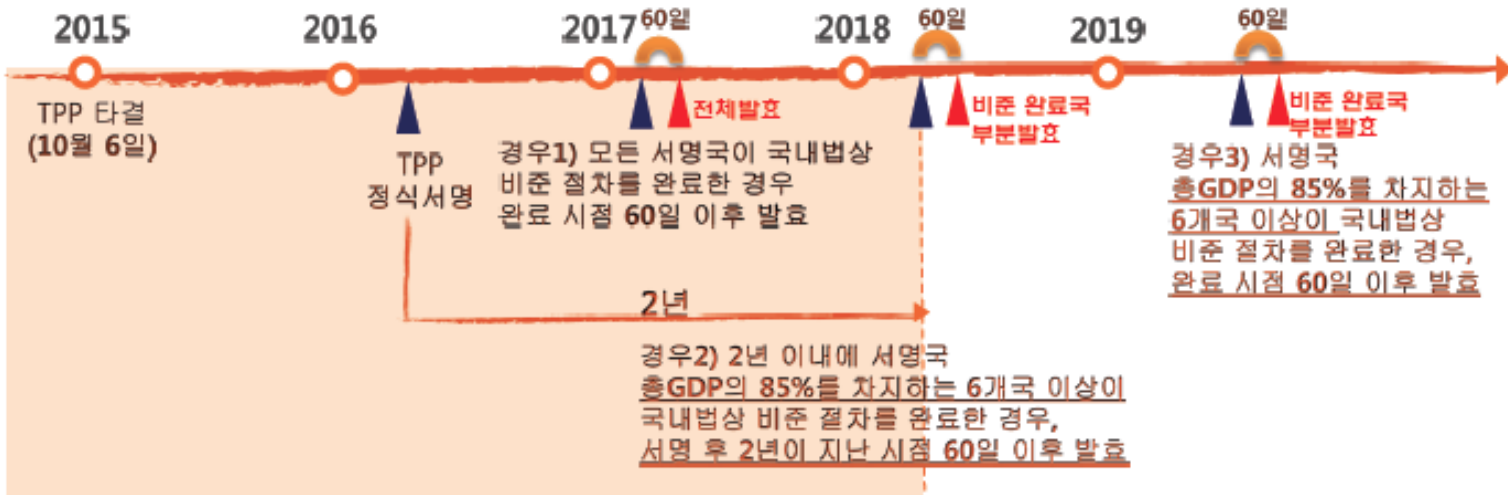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참여하는 P4 협상타결
2006년	P4 발효
2008년	미국참여 의사 밝히며 포괄적인 TPP 제안
2010년	TPP 협상 개시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까지 8개국 참여) 3차 협상에서 말레이시아까지 9개국 참여
2012년	캐나다 멕시코 참여
2013년	일본 참여 (18차 협상)
2015년	TPP 12개국 각료회의서 막판 협상 타결

인구
7억 9,900만명
(세계 비중 11.4%)

GDP
38조 1684억 달러
(세계 비중 약40%)

교육 규모
9조 6,222억 달러
(세계 비중 25.3%)

TPP Road Map



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 비준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60일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

서명 후 2년 내에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원서명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60일 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됨

원서명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TPP 협정문 주요 내용

Chapter	TPP (30개)	한미 FTA (24개)
1	최초규정 및 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상품
3	원산지	농업
4	섬유 및 의류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6	무역구제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8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9	투자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11	금융 서비스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無
13	통신	
14	전자상거래	
15	정부조달	
16	경쟁	
17	국영기업	無
18	지식재산권	
19	노동	
20	환경	
21	협력 및 역량 강화	無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無
23	개발	無
24	중소기업	無
25	규제 조화	無
26	투명성 및 반부패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27	행정 및 제도규정	1개 챕터
28	분쟁해결	
29	예외	
30	최종규정	

원산지 챕터는 상품이 TPP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TPP 12개국 간 무역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한·미 FTA의 주요 통관 관련 규범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함.

무역구제 챕터는 한·미 FTA 와 대체로 유사하며 급격한 수입증가, 불공정한 가격 및 보조금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긴급수입 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투명성 및 적법 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함



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은 품목수 기준 95~100%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달성

TPP 국가별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반면,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등 5개국은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

공산품의 경우에는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10개국은 100% 관세철폐

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협정 적용으로 인한 해당 국가, 해당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미국의 대 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양허	베트남 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스웨터, 풀오버 등	5.0, 16.5	즉시, 5년균등, 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스웨터, 풀오버 등	6.0~32.0	즉시, 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여성 바지(청바지 포함)	0.0~16.6	즉시, 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여성 슈트, 바지	10.3~14.9	5년균등, 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남자 바지(청바지 포함)	0.0~16.6	즉시, 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 소재의 남성 슈트, 바지	0.0~27.9	즉시, 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 소재의 여성 슈트, 바지	14.9~28.2	즉시, 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 소재의 남성 코트	4.4~27.7	즉시, 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남성 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 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주1 : 종량세는 제외

주2 : 11년철폐①(US6):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10년차까지 유지)→0%(11년차)

11년철폐②(US10):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0% 철폐(10년차까지 유지)→0%(11년차)

13년철폐①(US7):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12년차까지 유지)→0%(13년차)

13년철폐②(US9):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6년차까지 유지)→기준세율의 15% 추가철폐(7년차)→0%(13년차)

13년철폐③(US11):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0% 철폐(12년차까지 유지)→0%(13년차)

자료 : 미국 상무성(US DOC), 한국무역협회 미국통계(2015.1~8월 기준)

시사점

- (섬유 및 의류) 상대적으로 고관세인 미국의 섬유 및 의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이 11/13년 장기철폐로 설정되어 있으나, 관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 기업들은 미국의 對베트남 관세철폐를 활용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TPP 역외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TPP 주요국의 입장

국가	입장
미국	■ 2006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추진이 여의치 않자 TPP를 적극 추진 ■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구상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TPP를 통해 견제 ■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or "rebalancing" to Asia and the Pacific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013년 6월 협상개시)와 함께 TPP를 WTO 차원의 D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
일본	■ 일본-EU FTA(2013년 4월 협상개시)와 함께 TPP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수단으로 활용(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하나) ■ 아태지역에서 중국 견제 및 일본의 영향력 유지 ■ FTA에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대응
중국	■ TPP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수단으로 인식 ■ 외형상으로는 TPP에 대해 개방적 태도 보임 ■ TPP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
아세안	■ TPP 협상에 개별 회원국들이 참여함에 따라 2015년 AEC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의 결속력이 훼손되고 아시아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 ASEAN의 구심력 유지를 위해 AEC 및 RCEP 적극 추진

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 주도의 TPP는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위반 및 불투명 신고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조사 대상
적발시 과거 소급적용과 엄청난 벌금
및 즉각수입금지 조치 발휘

경쟁업체는 이미 TPP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관련 자료 등) 대응이 완료 되었는데,
귀사는 대응이 완료 되셨나요?

12개국가 참여 국가의 상이한 무역
협정과 프로세스가 통합 및 간소화 되나
참여 국가 관세 당국의 조사권 우산에
들어옴

고객에게 우리 기업은 Risk가 없는
기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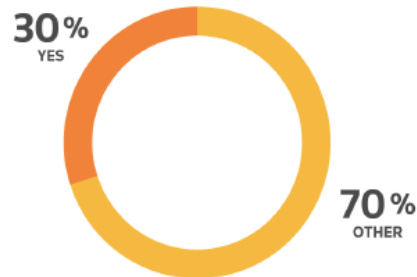
Risk 사례

■ 美 포드자동차는 1996년부터 멕시코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고, 수입신고 시 **멕시코 코클리社의 NAFTA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특혜관세를 신청했다**. 2001년 1월 9일 美 관세청은 포드社(수입자)에 2001년 2월 8일까지 수입물품과 관련해 이미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와 해당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드社는 美 관세청의 자료 요청이 U.S.C.§1509(a)(1)(A)에 정의된 수입신고 자료(Entry Record)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foreign producer record)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美 관세청은 벌금 4,193만 1,997달러를 부과했고, 포드의 청원으로 벌금액을 2,164만 2,481달러로 감액 조정해 다시 부과했다. 그럼에도 포드社가 벌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06년 1월 11일 애초 부과했던 **벌금 4,193만 1,997달러의 징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9월 26일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벌금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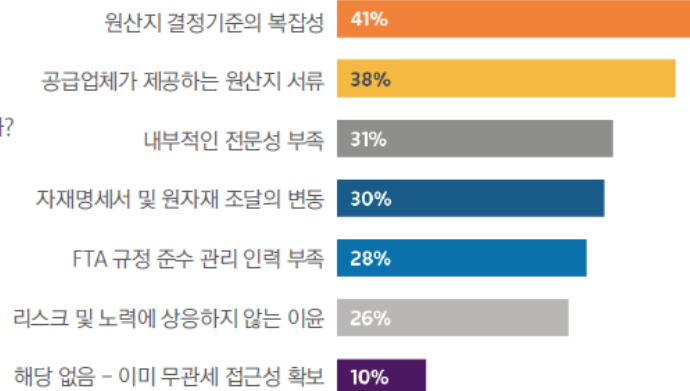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무역 설문 자료

FTA 활용
현재 조직에서 활용 중인
FTA는 몇 건입니까?



FTA 관련 어려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FTA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대기업조차도 FTA를 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규정 준수와 벌과금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매년 더 많은 FTA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통해 업무절차의 단일화 및 자동화는 보다 편하고 확실하게 FTA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열쇠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성장훈 이사
FTA 책임자
롭슨 로이더
ONESOURCE Global Trade

응답자의 79%는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는 것과 서류 수집의 어려움을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협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400건 이상의 FTA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FTA를 전면 활용하지 않으면 매출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FTA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FTA 현황

기체결된 FTA

- 베트남-ASEAN
- 베트남-일본EPA
- 베트남-칠레

서명/타결된 FTA

- 베트남-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 베트남-한국
- 베트남-EU

협상중인 FTA

- 베트남-EFTA
- 베트남-TPP
- 베트남-RCEP

검토중인 FTA

- 베트남-FTAAP

<http://wtocenter.vn/content/efta-and-vietnam-continue-free-trade-talks#>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C/O) 발급 필수 문서

Certificate of Origin

Business Registration

Calculation of R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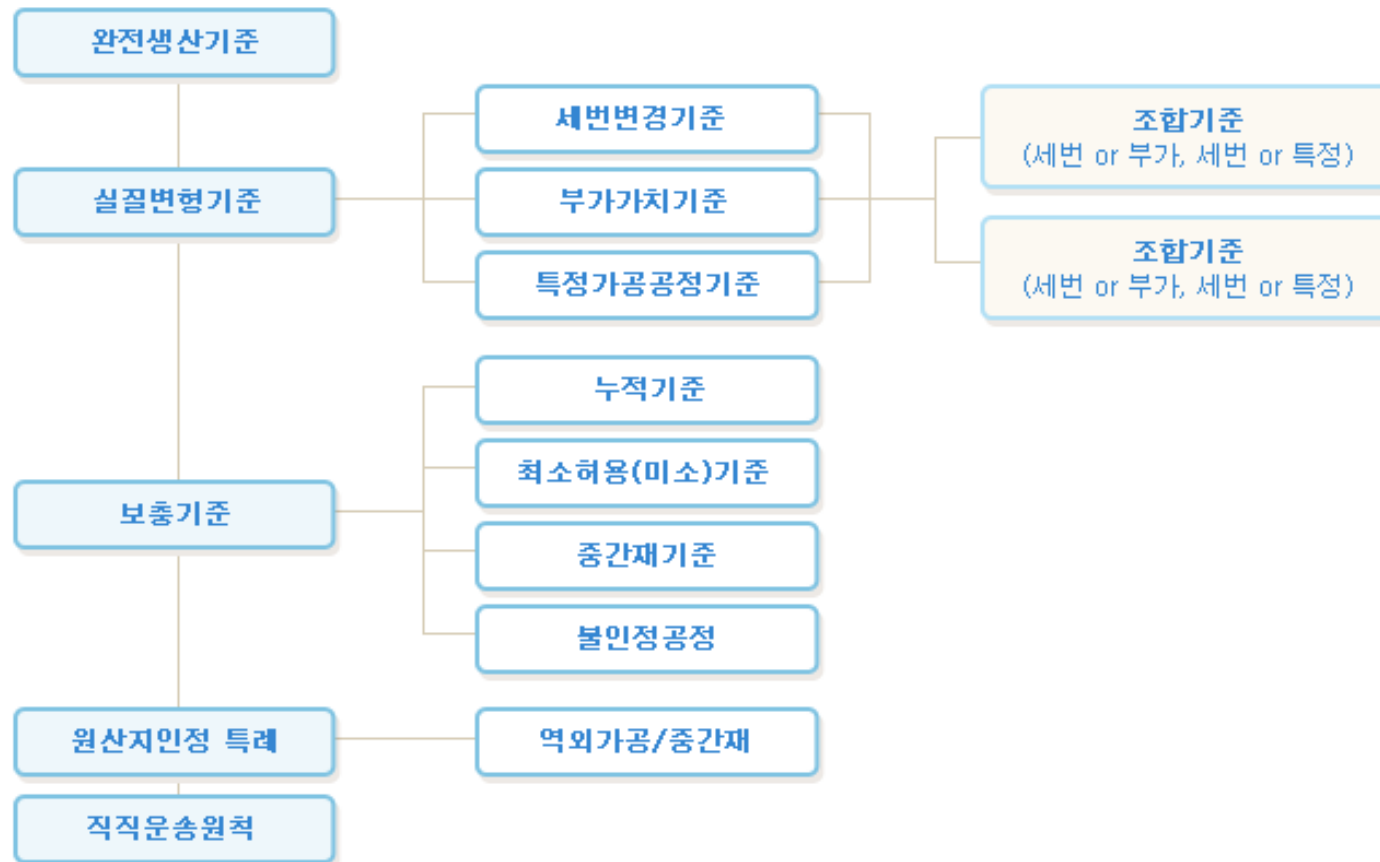
Bill of Lading

Production Process

Commercial Invoice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반적 체계

FTA원산지결정 기준의 일반적 체계



HS Code Rule에 따른 판정 기준의 다양함

Stainless Coil : 7220.20

류 (Chapter)

호 (Heading)

소호 (Sub-Heading)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Change of Chapter)
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Chapter)
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Stainless Coil
HS code : 7220.20
or 7220.90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충분 가공 공정)



Cylinder Head
Gasket
HS code : 8484.10

부가가치비율에 따른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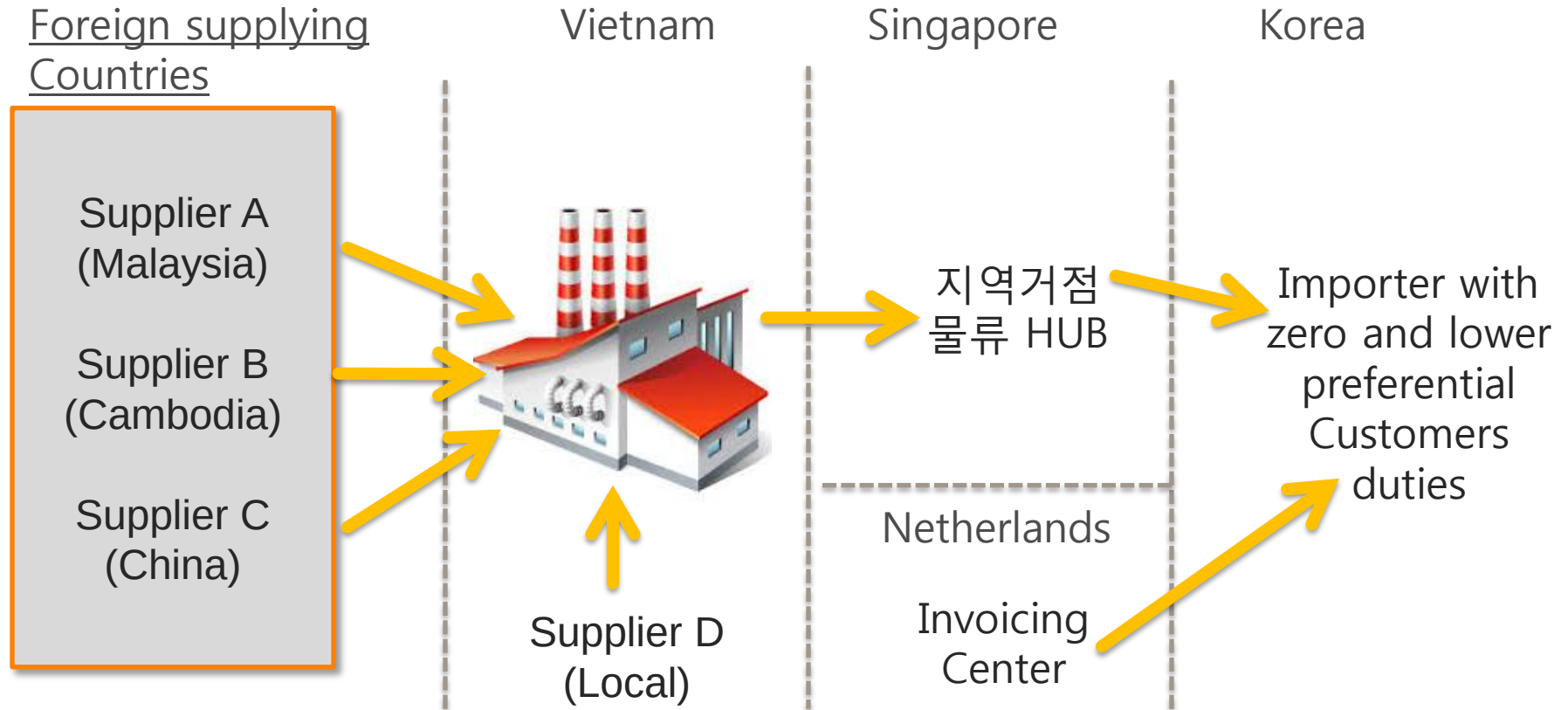
수출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 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 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협정별로 차이가 있음.

- RVC: 방식: 한-싱, 한-아세안, 한-칠레, 한-인도, 한-미
- MC방식: 한-EFTA, 한-EU

Method		설 명	공식
RVC (Regional Value Contents)	직접법 (Build-Up)	완제품 가격에서 역내산 재료의 가격 비중을 곧바로 구하는 법	• LC 비율 = 원산지재료비 / 상품가격 X 100 • LC: Local contents 역내산 비율
	공제법 (Build-Down)	거래가격에서 수입산재료를 공제하여 역내산 원산지재료의 비중을 계산하는 법	• LC 비율 =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비) / 상품가격 X 100
	순원가법 (Net-Cost)	제품의 순원가에서 역외산 재료비를 공제한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	• LC 비율 = (상품가격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비) / 상품가격 [순원가] X 100 • 한-미 FTA에서 자동차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 - 직접법 또는 공제법과 함께 선택가능
MC법 (iMport Contents Method)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 비원산지 재료비 X 공장도가격 X 100 •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한-EFTA, 한-EU FTA에서 사용

FTA 활용과 Global Business Chain의 변화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과 FTA 관련 이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용



TPP를 위시한 전략적 원산지 관리 Point

- 1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FTA에 대응 가능한가?
- 2수출국가로의 실사 및 조사시 관련 문서, 레포트 준비가 가능한가?
- 3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최적의 수출지, 최적의 원료 수입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 - 최적의 가격 분석!
- 42017년 WCO HS CODE Revision시 기존 HS CODE와 연동 가능한가?
- 5HS CODE별 Tariff rates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가?
- 6담당자가 변동됨에 있어서 C/O 발급에 차질은 없는가? 지속적인 문서 관리 되는지?



FTA 솔루션 소개

솔루션 주요 기능

Global FTA Ready

- NAFTA 자동차 관련 요건 등 국가별 FTA 요건 구비
- ✓ Traced value
- ✓ Net cost
- NAFTA 자율 발급 C/O 등 국가 별 C/O 양식 구비
- MERCOSUR의 HS Code correlation 등 Multi- HS Code 컨텐츠 구비



Advanced Automation

- 표준화된 ERP 인터페이스로 신속한 ERP 연계 가능
- 최근 실사 당국의 검증 트렌드 반영하여, 월마감된 회계 DB 기준 원산지 확정 판정이 가능
-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관련 자동 알림 기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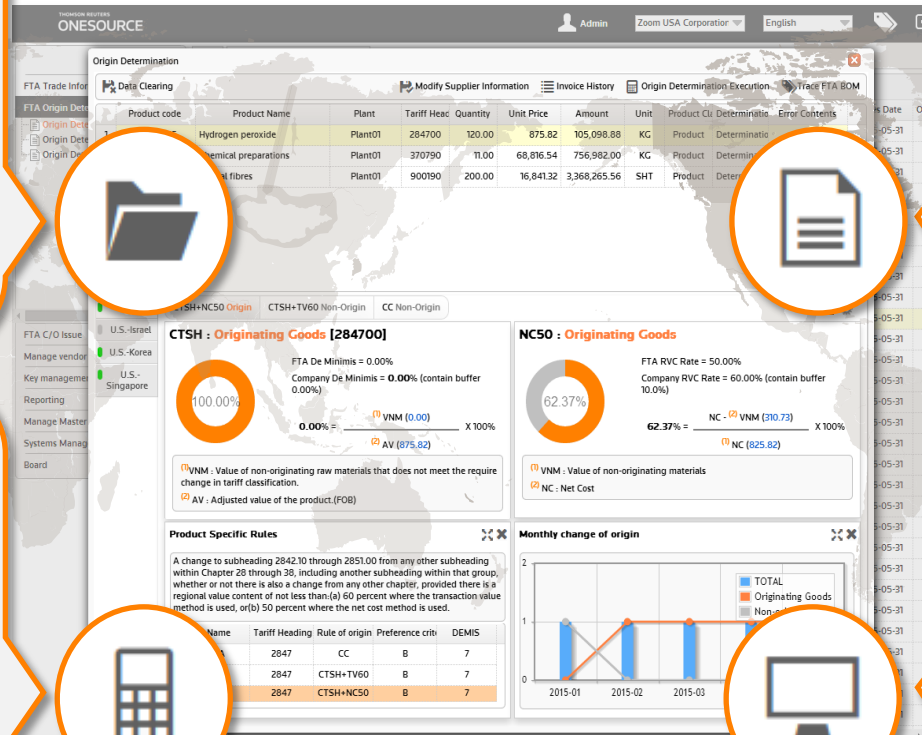
Global FTA Content and Team

- 가장 최신의 Global FTA 컨텐츠 업데이트 제공
- ✓ 기본 및 협정 특혜 세율 제공
- ✓ 원산지 규정 관련 기본 및 PSR 정보 제공
- ✓ FTA 별 HS Code set 정보 제공
- 솔루션 구축에 있어 국가 별 local team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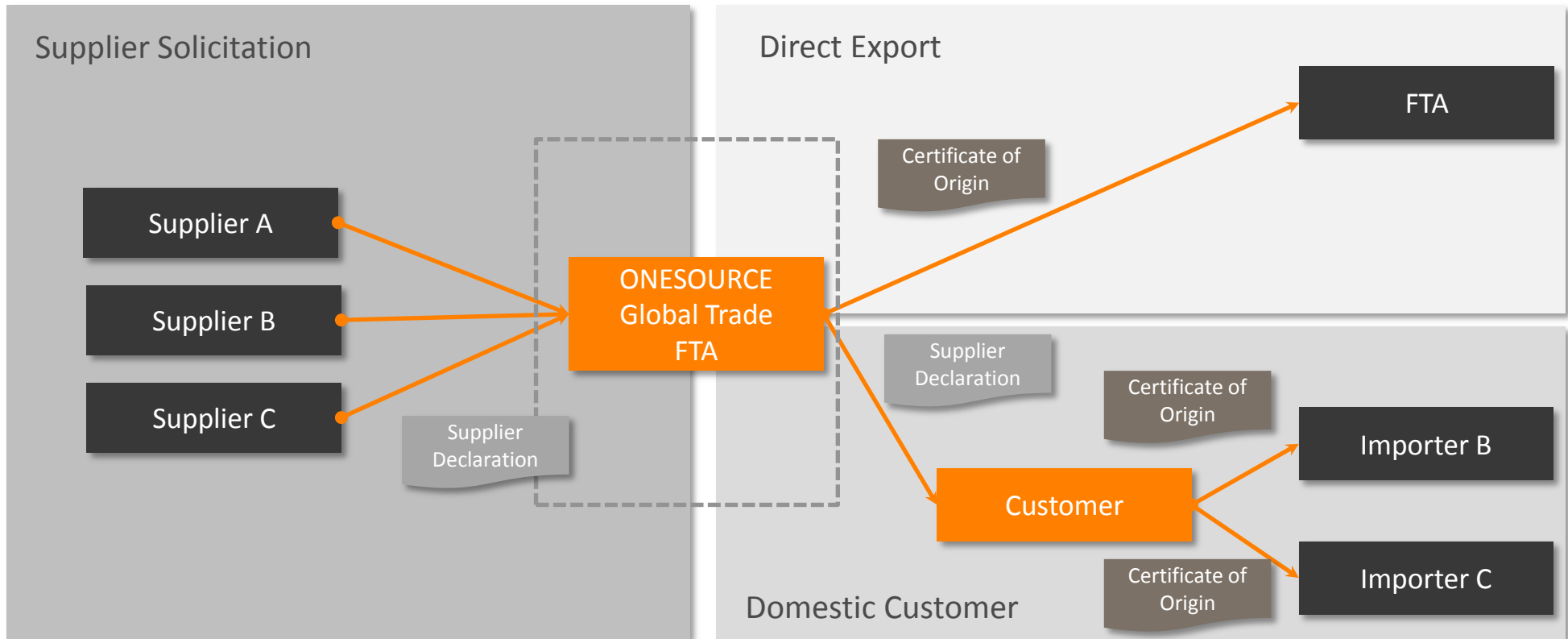
Compliance Driven

- 상시 원산지 compliance 모니터링을 위한 Report 생성 가능
- 실사 대비 자료 생성 및 관리 가능
- 정확한 원산지 규정 및 Special treatment/ processing 규정 시스템 적용



솔루션 개요

-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 – Production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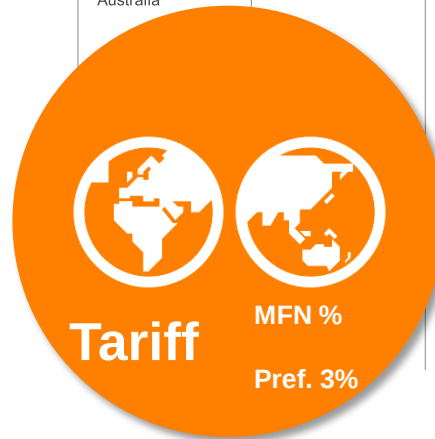
컨텐츠 관리



Global FTA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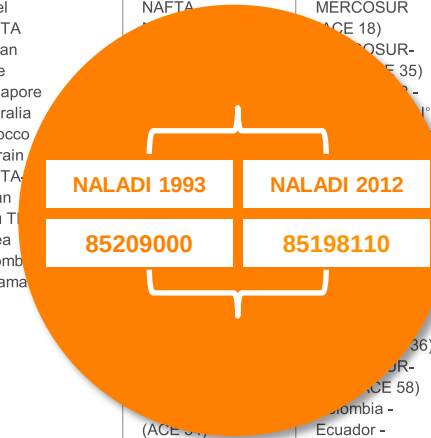
전세계 170+ FTA 관련 PSR (Product Specific Rules: 제품별 원산지 규정) 조회 및 실시간 Update

Korea	Japan	China	US	Mexico	Brazil	Turkey
Chile Singapore EFTA (4) ASEAN (10) India EU (28) Peru United States Turkey Australia Canada Vietnam	Singapore Mexico Malaysia Chile Thailand Indonesia Brunei Darussalam ASEAN Philippines Switzerland Vietnam India Peru Australia	ASEAN Pakistan Chile New Zealand Singapore Peru Hong Kong Macao Costa Rica Iceland Switzerland APTA	Israel NAFTA Jordan Chile Singapore Australia Morocco Bahrain CAFTA Oman Peru T Korea Colomb Panama	NAFTA (ACE 37) Ecuador (ACE 29) Panama (AAP.A25TM	MERCOSUR (ACE 18) MERCOSUR- (ACE 35) MERCOSUR- (ACE 36) MERCOSUR- (ACE 58) Colombia - Ecuador - Venezuela - MERCOSUR (AAP.CE N° 59)	Egypt Israel Morocco EU (Customs Union) EFTA Korea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Chil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eorgia Jordan Mauritius Lebanon Montenegro Palestinian Auth Serbia Syria Tunisia Euro- Part Tra



Global Tariff Rate

전세계 FTA관련 수입국별 Tariff (MFN, Pref.) 조회 및 실시간 Update



HS Code Correlation

국가별 HS Code 변경에 따른 Correlation정보 Update 및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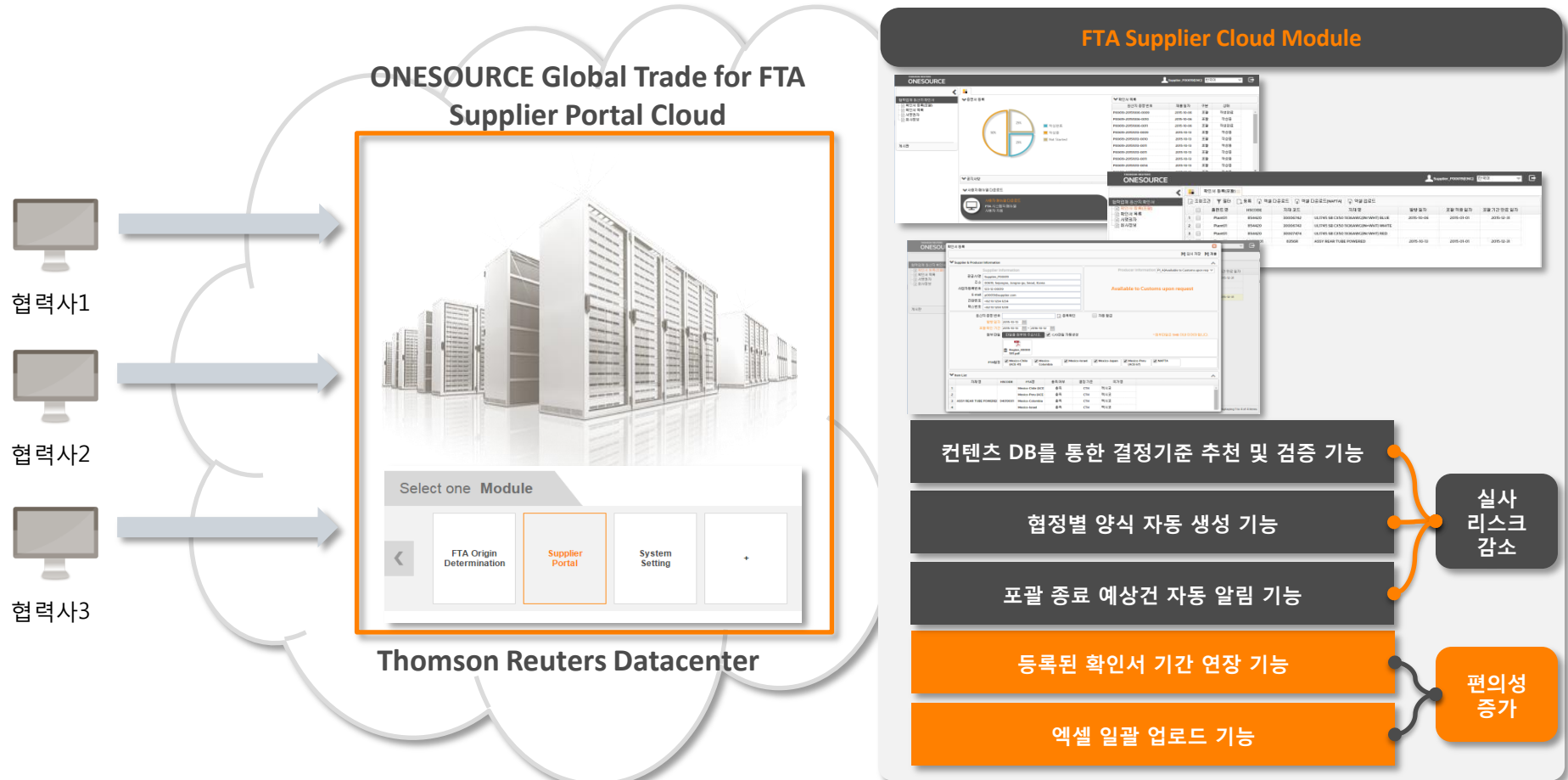


FTA Specific Rules

FTA협정별 Specific Rules Support

협력사 관리

-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 는 협력사 관리 기능중 사후검증 위험 감소를 위한 결정기준 추천, 협정별 양식 자동 생성, 자동 알림 기능 및 엑셀업로드, 확인서 기간 연장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별 HS CODE 관리

-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고객사별 자재코드, 자재명, HS CODE 다중 관리 가능.
수출국에 따른 HS CODE 관리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

Administrator Zoom Corporation (HQ) 한국어

고객사 자재 관리

조회조건 필터 추가 엑셀 다운로드

	플랜트	자재 코드	자재 명	HSCODE	고객사 명	고객사 자재 코드	고객사 자재 명	고객사 HSCOD
1	[1001]Plant01	10000002	1308-CM	853669	Customer_S006091	C10000002	1308-CM-S006091	853666
2	[1001]Plant01	10000121	A1-16PA-2.54DS	853669	Customer_S006111	1000010022	A1-16PA-2.54DS0022	
3	[1002]Plant02	10000121	A1-16PA-2.54DS	853669	Customer_S006111	10000100	A1-16PA-2.54DS00	
4	[1001]Plant01	10000121	A1-16PA-2.54DS	853669	Customer_S006203	1000010022	A1-16PA-2.54DS0022	
5	[1001]Plant01	10000121	A1-16PA-2.54DS	853669	Customer_S006851	10000100	A1-16PA-2.54DS00	
6	[1002]Plant02	10000121	A1-16PA-2.54DS	853669	Customer_S006851	10000111	A1-16PA-2.54DS11	

고객사 자재 정보

플랜트 [1001]Plant01

자재 코드/자재 명 10000002 1308-CM

HSCODE 853669

고객사 S006091 Customer_S006091

고객사 자재코드 C10000002

고객사 자재명 1308-CM-S006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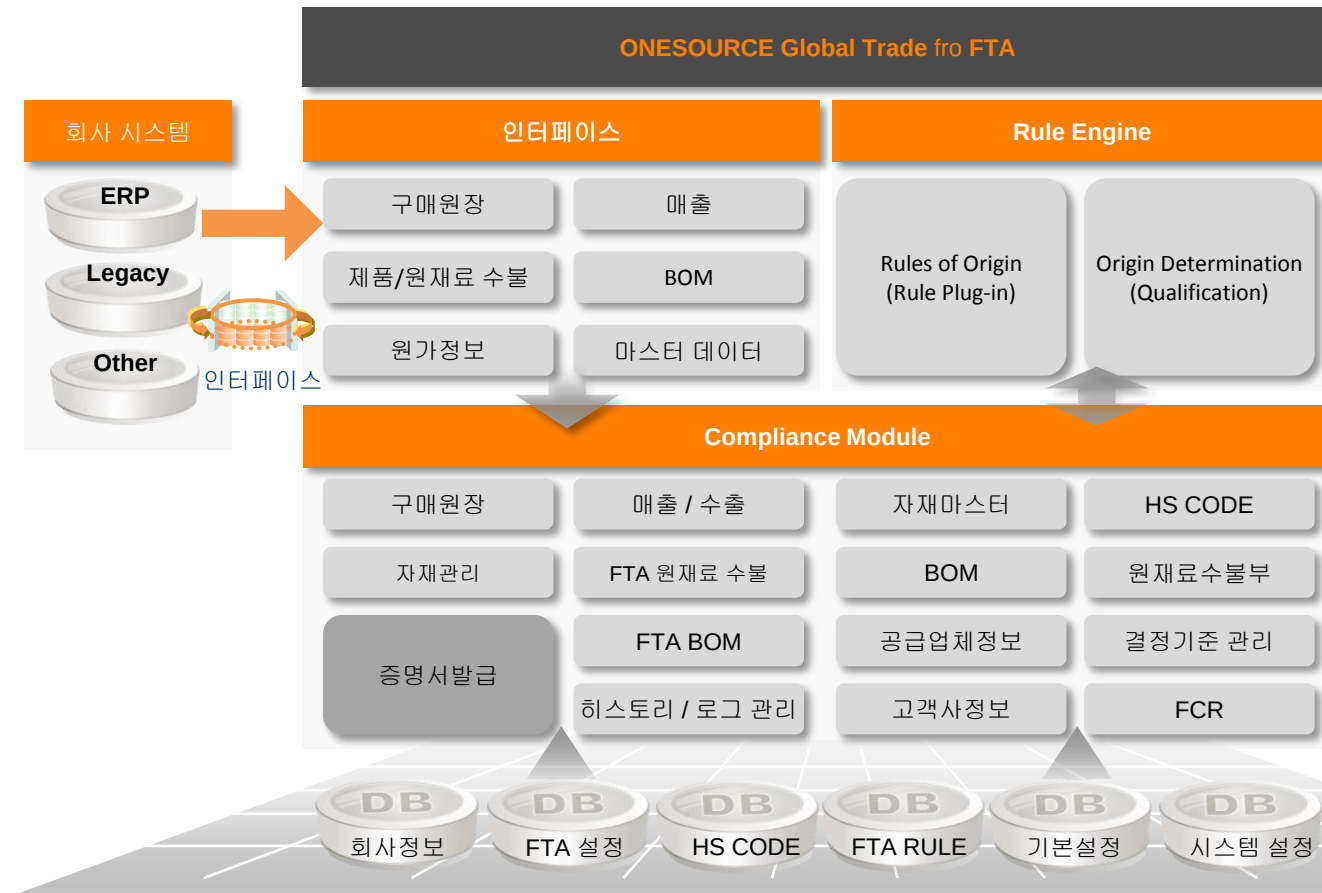
고객사 규격 15X20

고객사 HSCODE 853666

비고 고객사의 요청 HS Code 및 고객사 자재코드 관리

ADVANCED 자동화

-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 는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 및 생산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여 원재료의 역내/역외 재료비 자동 산정 및 룰 콘텐츠 Database 연계를 통한 자동화된 원산지 판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 주요 ERP(SAP, Oracle) Certificate 보유
- 주요 ERP 및 Legacy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시스템과도 인터페이스 가능

Rule Engine

- Global FTA Content 전담 조직이 상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의 Rule Content를 통한 원산지 판정 가능

Compliance

- 최신 재무 및 생산 데이터를 회사의 ERP로부터 인터 페이스 하여 판정 진행
- 사후검증시 소명 가능한 재고 관리 기법 을 통해 회사의 BOM 및 수불 데이터를 이용해 역내/역외 재료 비 자동 계산
- 컨텐츠 전담팀을 통한 최신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 및 리스크 감소

내수 원산지 판정

- 다양한 업종의 원산지 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한 확장성 있는 업무 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준수 강화

내수 증명서 발행시 동일 고객사 제품 월별 합산 판정 및 증명서 발행 기능으로 중복 업무 제거 가능

포괄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회사의 최신 재무 데이터를 통한 지속적인 유효성 검증

판정 결과의 모니터링 및 원산지 지위 변경에 따른 수정 발급 기능을 통한 사후검증 리스트 최소화

판정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 및 사후검증 대응 자료 일괄 조회 기능 제공

협력사 관리 편의 기능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시 자재 정보 매핑을 통한 고객사 자재 코드 증명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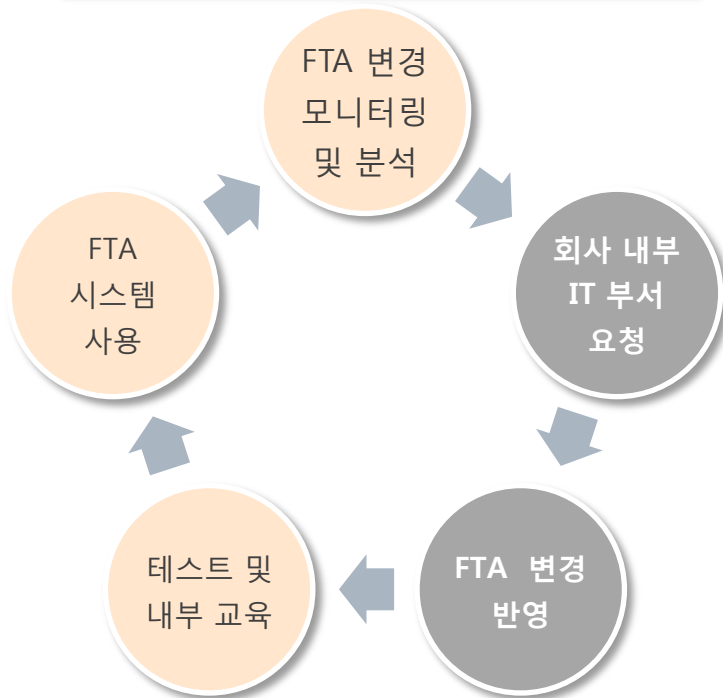
협정별 고객사별 다양한 FTA 증명서 양식 제공 및 매핑을 통한 증명서 발급 업무 유연성 제공

판정 기초 데이터 변경에 따른 FTA원산지 업무 영향도 리포트 통한 모니터링 및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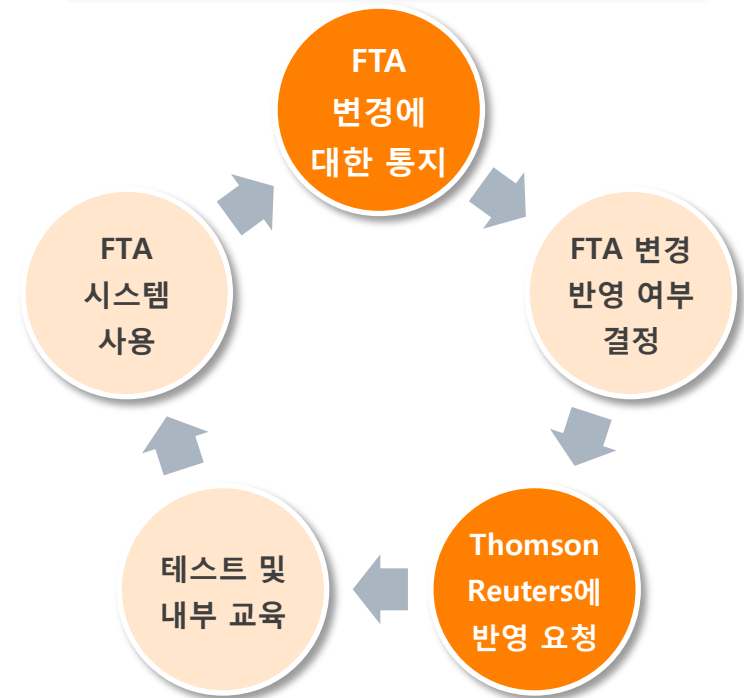
Why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

- FTA 변경 사항 발생 시, Thomson Reuters에서 변경에 대한 정보가 통지됨
- 변경사항 적용은 고객의 적용 여부 결정에 따라, Thomson Reuters에서 수행함

ONESOURCE Global Trade FTA 적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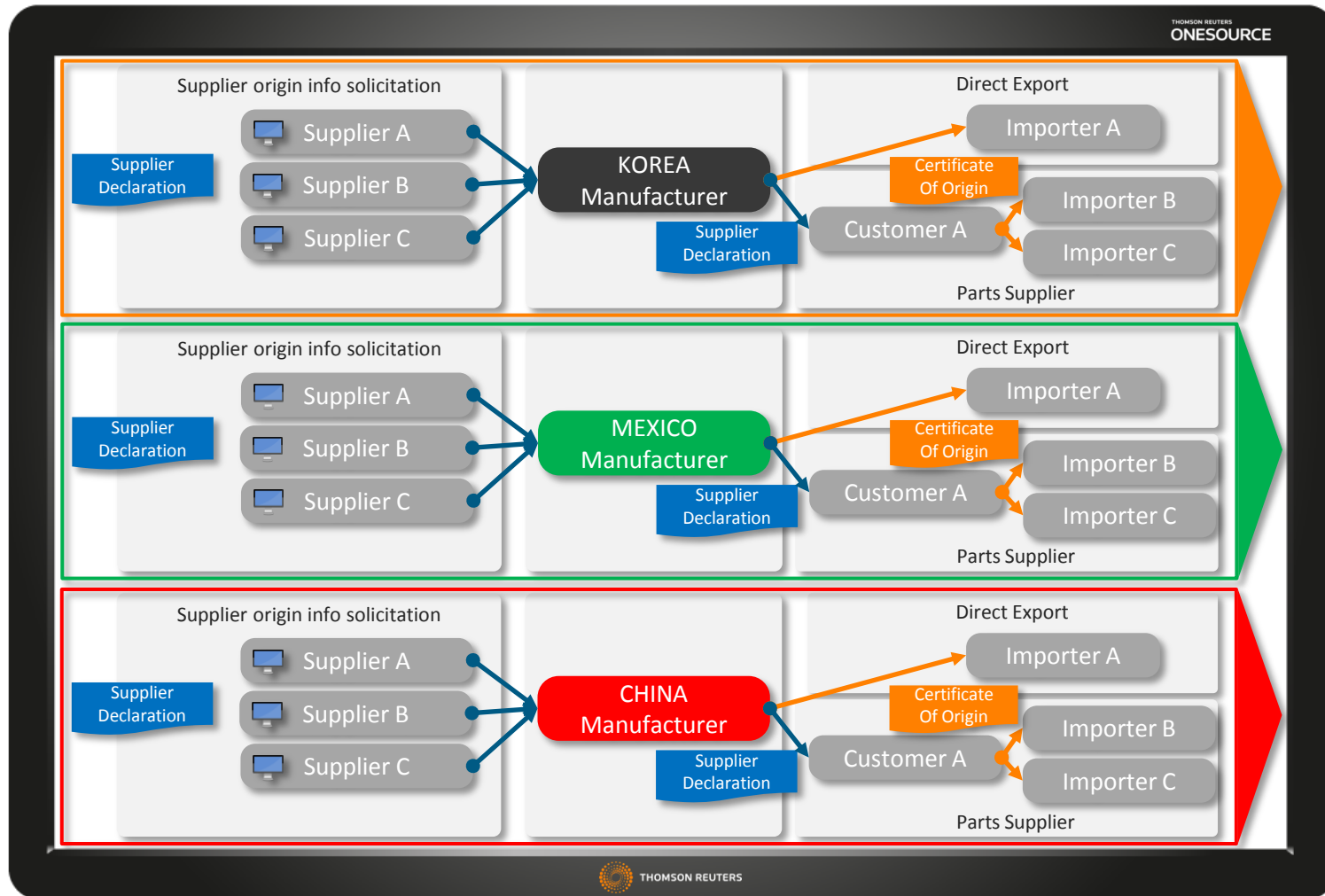


ONESOURCE Global Trade FTA 도입 후



FTA 담당자는 리스크 모니터링 및 원산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FTA Compliance Global Visibility



HQ

지역별 역내산 원산지율
모니터링

지역별 원산지 수취율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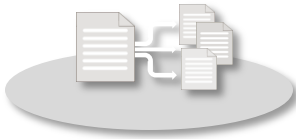
지역별 HS코드 미분류
내역 / 변경 내역
모니터링

지역별 관세절감효과



Manual vs. automated

1 사전준비



2 원산지 확인서 수취



3 원산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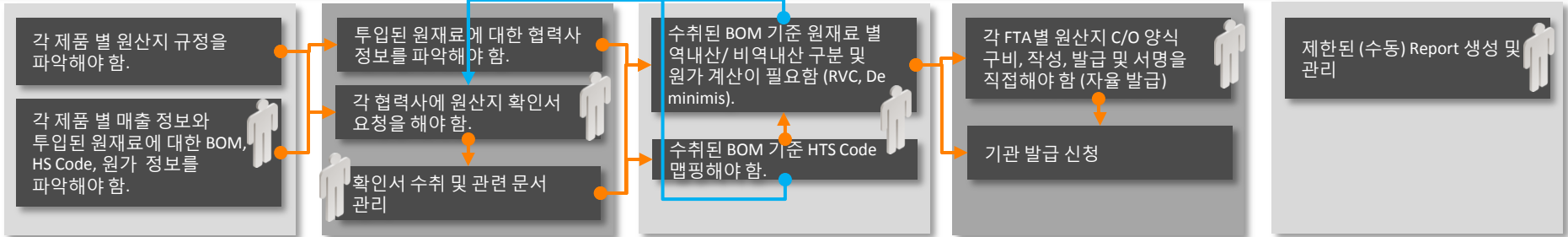
4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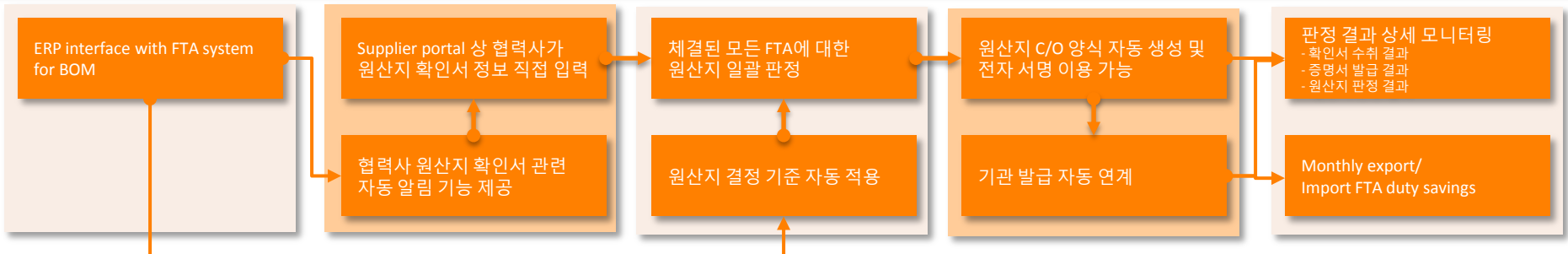
5 모니터링 & 리포트



Manual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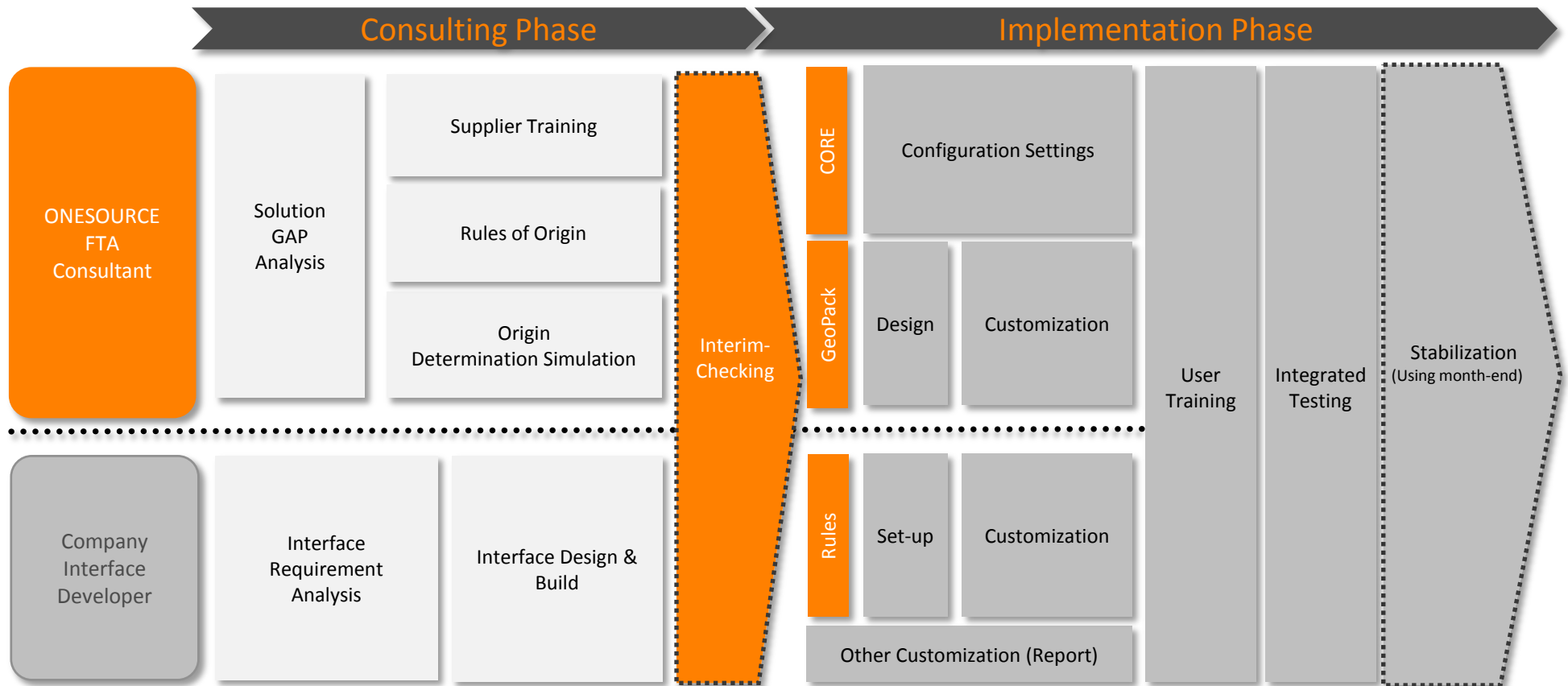


Automated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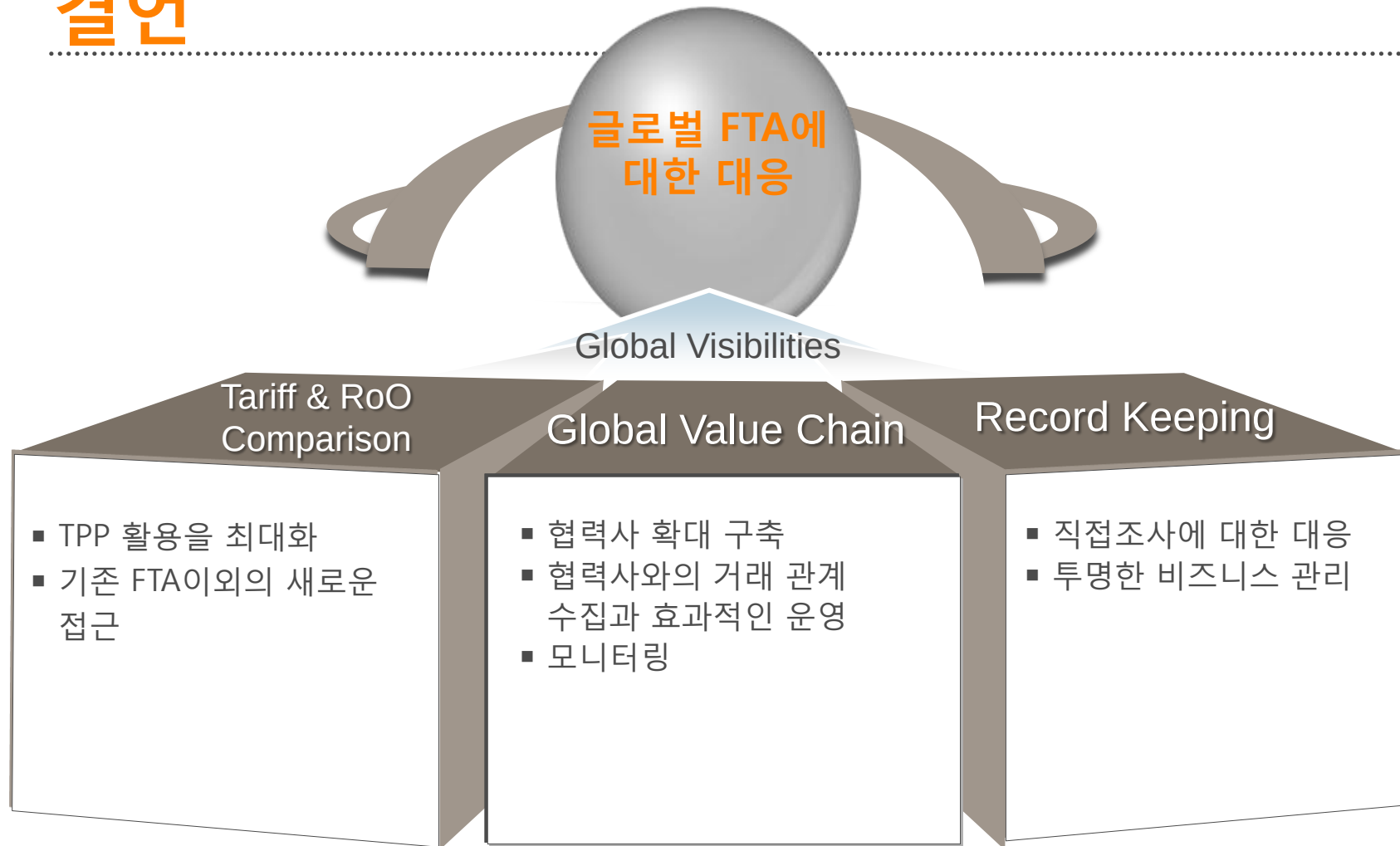


솔루션 구축 방법론

- ONESOURCE Global Trade for FTA는 기본 제공되는 설정모듈을 통해 FTA 원산지 판정 시스템의 Core 및 GeoPack을 고객의 요건에 맞게 단기간에 설치 가능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결언



Global reference





REUTERS/Darren Staples

ANY QUESTIONS?



THOMSON REUTERS

CONTACT US

오성일

톰슨 로이터

Paul.oh@thomsonreuters.com

Mobile +82-10-9239-5379



THOMSON REUTERS